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압류·양도 금지 조항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Prohibitive Provisions of Seize or Assignment in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김 성 완*

Seongwan Kim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 청구권의 압류 또는 양도금지 조항이 책임보험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포함하는지 및 피해자의 적정치료를 위하여 사고당시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여 의료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 금지조항과 관련한 여러 분쟁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압류 및 양도금지 조항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위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조항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형평에 치우침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국문 색인어: 가불금청구권, 보장사업청구권, 압류금지, 양도금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직접청구권, 책임보험

한국연구재단 분류 연구분야 코드: B130320

* 법학박사, 손해보험협회 팀장(swkim2582@naver.com)

논문 투고일: 2016. 01. 27, 논문 최종 수정일: 2016. 06. 16, 논문 게재 확정일: 2016. 08. 11

I. 서언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수는 200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¹⁾. 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의 생활 편익은 증가하였으나 이와 더불어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또한 꾸준히 증가되어 연간 약 3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있다²⁾. 이에 국가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자동차보유자로 하여금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가입을 강제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케한 경우 사망이나 장애의 경우 최고 1억 원을 부상의 경우 최고 2,00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³⁾.

이와 더불어 자배법에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러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 첫째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으로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같은 법 제10조). 둘째는 가불금청구권으로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같은 법 제11조). 셋째는 보장사업청구권으로 이는 자동차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유불명인 사고건의 피해자는 정부에 책임보험금의 지급범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같은 법 제30조).

자배법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은 피해자가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한 손해에 대한 보상 즉 휴업손해와 장래 노동력상

-
- 1)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1,887만 대, 2013년 1,940만 대, 2014년 2,012만 대, 2015년 2,099만 대의 등록현황을 보이고 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6),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 2)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간(2014년) 사망 4,762명, 부상 337,497명이 자동차로 사망 또는 부상을 입고 있다(<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3#aco02>, 2016. 1. 4. 검색).
 - 3) 2016. 4. 1 이후부터 사망·장애의 경우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 3,000만 원으로 한도금액이 상향되었다.

실로 발생하는 상실수익에 대한 보상 및 피해자의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만일 피해자가 이를 적시에 지급받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장애가 발생하는 등 그 생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책임보험 및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의무보험⁴⁾을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만일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위와 같은 보험금 등을 수령하게 되면 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한 입법취지가 퇴색된다 할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은 자배법 제40조에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위 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청구권의 압류 또는 양도금지 조항이 책임보험에만 적용되어야 하는지,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도 포함하는지 및 피해자의 적정치료를 위하여 사고당시 보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하여 의료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등 금지조항과 관련한 여러 분쟁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하여 그 개관과 동 청구권의 압류·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위 청구권의 압류 또는 양도금지 조항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

자배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에는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이 있다. 이들 청구권을 자배법에 규정

4) 자배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보험 가입 이외에 추가 1억 원 이상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한 이유는 피해자가 자동차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생계유지 자체가 곤란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해서는 압류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동 청구권이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게 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 보여진다. 압류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의 경우 1963년 자배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보장사업청구권의 경우 1984년 보장사업제도가 보유불명자동차 피해에 한하여 보상하던 것을 무보험자동차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압류금지 조항이 신설되었고, 양도금지 조항은 1991년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위 직접, 가불금, 보장사업청구권에 추가되었다. 이하에서는 각 청구권의 압류 또는 양도 금지 조항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규정된 각 청구권의 도입취지, 인정근거, 법적성질 및 각 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금지 조항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본다.

1. 직접청구권

가. 도입취지

책임보험계약은 본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가해자 즉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이다. 그러나 일반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가 없다. 즉, 가해자(피보험자)와 보험자 간에는 보험계약관계에 따른 법률문제가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는 배상책임관계에 따른 법률문제가 있으나 보험자와 피해자 간에는 아무런 법률문제가 없다⁵⁾. 그러므로 피해자 구제

5) 정찬형(2015), **상법개론 제14판**, 법영사, p. 678.

및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가해자(피보험자)가 일반적인 보험계약 원리에 따라 먼저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한 후 이를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면 가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피해자는 일반 채권자 중 일부에 불과하여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⁶⁾. 그 밖에 피보험자의 보험금 유용 가능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불안정한 손해배상 가능성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원래 책임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제3자(피해자)에 대한 재산적 급여에 의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발달한 것이지만, 오늘날은 사회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점이 중시되기 때문⁷⁾에,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게 되었다⁸⁾.

나. 인정근거

피해자인 제3자가 갖는 직접청구권의 인정근거에 대한 학설로는 책임보험의 성질 자체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모든 책임보험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견해인 책임보험 본질설⁹⁾과 피해자 보호라는 정책적인 목적하에 상법 등과 같은 법규정의 존재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그 근거를 법률의 규정에 두려는 견해인 법정효과설¹⁰⁾로 나뉘며 법정효과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대

6) 박영준(2004),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안암법학** 제18호, p. 221.

7) 박세민(2016),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p. 576;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p. 333.

8) 박세민(2008), “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논점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제27호, p. 498.

9) 책임보험 본질설에 따르면 책임보험의 본질은 원래 피해자인 제3자의 보호와 구제를 위한 것이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만족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보호 받는데 불과하다고 보고 피해자는 책임보험에 있어서 제1차적 피보험자이고 피해자는 당연히 직접청구권을 가진다고 한다(田邊康平(1979), **被害者の保険金に對する直接請求權 保險法の理論と解釋** 東京: 文眞堂, 187頁). 이 견해는 직접청구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의 본질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김태주·김문재(1985),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경북대 법대논총** 제23집, pp. 126-127).

10) 법정효과설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한 효과라고 본다. 즉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책임보험계약에서의

법원의 입장 또한 법정효과설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판례를 보면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나 자배법 제12조 등에서의와 같이 법률에서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이 입장을 취하고 있다¹¹⁾.

다. 법적성질

피해자인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에 대하여는 상당기간동안 논란이 있었고 그 성질에 관하여 대체로 손해배상청구권설과 보험금청구권설로 대별되며 절충설의 입장을 취하는 견해도 있다.

먼저 직접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첫째, 피해자와 보험자 간에는 보험계약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청구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로, 피해자는 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고 책임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제3자 즉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하므로 제3자를 바로 피보험자로 파악하는 것은 제3자를 위한 일반 손해보험계약과 책임보험계약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되어 책임보험계약의 성질에 반한다는 점이라는 견해이다. 둘째, 책임보험은 그 본질상 피해자의 존재 및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상가능성이 보다 확실한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것일 뿐 그 실질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셋째,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연대채무관계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¹²⁾

절차를 간편하게 한다는 것과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정책적인 견지에서 인정된 권리라고 해석하고 있다(김상목·안근(2008), “자동차 사고 시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대한 소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대인배상을 중심으로 -”, **지역발전연구** 제8권 제1호, p. 80).

11)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2681 판결.

이 견해가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¹³⁾ 독일 및 프랑스의 경우도 이 견해를 다수설로 보고 있다¹⁴⁾.

다음으로 보험금청구권설은 책임보험계약의 구조를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 피해자는 피보험자이고 가해자는 보험계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피보험자로서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견해이다¹⁵⁾.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였을 뿐 그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¹⁶⁾. 영국+의 경우도 The Third Parties(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이 피해자에 이전되어 귀속된다고 규정하여 직접청구권을 보험금청구권설로 보고 있다¹⁷⁾.

이외에 절충설이 있으며 절충설의 입장은 자배법상의 강제보험인 책임보험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임의보험인 대인배상²는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는 견해이다¹⁸⁾.

- 12) 강재철(1991), “책임보험과 피해자인 제3자”,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pp. 522~523.
- 13) 장경환(2003),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pp. 144~145; 김성태(1996),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상사판례연구Ⅱ**, pp. 189~190; 황경학(1995),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소고”, **인천법조**, 제2집, p. 67.
- 14) 독일의 경우 보험계약법 제115조에서 보험자와 급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는 연대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도 대법원의 판결에서 “비록 사고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소권은 가해자와 보험자 간의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계약의 범위에서 행사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법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야기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기초로 인정되는 것이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해석하고 있다(박영준(2010),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pp. 238~239).
- 15) 양승규(2005), **보험법 제5판**, 삼지원, pp. 376~377.
- 16) 양승규(1995),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성질”, **손해보험**, 제325호, 손해보험협회, p. 76; 정경영(2000), “공동불법행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상사법판례연구**,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p. 397; 정진옥(1996),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상사판례연구**, 제7집, 한국상사판례학회, pp. 177~179.
- 17) 문병일(2010),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P&I 보험을 중심으로”, **한국해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pp. 242~244.

우리나라 판례의 경우 초기에는 보험금청구권설의 입장을 취하였으나¹⁹⁾, 이후 상법의 개정으로 직접청구권의 명문화를 계기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판시²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설로 보았고 다시금 “보험금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바탕을 두고 그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다”고 판시²¹⁾하여 보험금청구권설의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고 판시하여 손해배상청구권설로 보고 있다²²⁾.

라. 직접청구권의 압류·양도금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프랑스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직접청구권에 해당하는 직접소권(action directe)의 경우 보험과 관련하여 먼저 일반책임보험(특히 화재보험)에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고, 이후 1930년대에 자동차보험으로 확대하여 인정하였다. 현재에는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책임보험에도 보험법에서 직접소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소권에 대하여 압류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²³⁾.

18) 장경환(2002), “책임보험에서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 **보험법연구**, 삼지원, pp. 169-171.

19) 대법원의 보험금청구권설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 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 청구권에 다름 아니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3.4.13 선고 93다3622 판결;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4424 판결; 1997.11.11 선고 97다36521 판결).

20) 대법원 1994.5.27 선고 94다6819 판결.

21)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4424 판결.

22) 대법원 1995.7.25 선고 94다52911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다17544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8다44956 판결; 대법원 2000.6.9 선고 98다54397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9다37856 판결;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다61753 판결.

23) 오수원(20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6.4.20.자 2005마1141결정-”, **법조**, Vol.629, pp. 291~292.

독일 보험계약법 제110조²⁴⁾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재산에 파산이 개시된 경우, 제3자는 그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가지는 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에서 다른 채권자로부터 별제하여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보험자의 일반 채권자와 차별화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1959년 자동차에 의한 민사책임을 위한 강제보험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1965년 자동차보유자의 의무보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3조에서 직접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의무책임보험에 직접청구권을 도입하였으며 이후 보험계약법이 개정되면서 의무보험법에서는 삭제되고 보험계약법 제115조에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²⁵⁾. 그리고 직접청구권의 압류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보험계약법 및 자동차의무보험법에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보유자로서 하여금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운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조), 같은 법 제16조에 “피해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에서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해야 함을 청구할 수 있다”하여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 조항은 같은 법 제18조에 규정되어 있다.

24) §110(Insolvenz des Versicherungsnehmers) VVG. Ist über das Vermögen des Versicherungsnehmers das Insolvenzverfahren eröffnet, kann der Dritte wegen des ihm gegen den Versicherungsnehmer zustehenden Anspruchs abgesonderte Befriedigung aus dem Freistellungsanspruch des Versicherungsnehmers verlangen.

25) 독일 보험계약법(Versicherungsvertragsgesetz; VVG)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7년까지는 의무보험법(Pflichtversicherungsgesetz; PflVG) 제3조에서 자동차책임보험에 한하여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으나 2008년 보험계약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115조를 통하여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일반책임보험에서가 아닌 계약이 강제된 의무책임보험에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김은경(2012), “독일 보험계약법상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변화”,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 451).

2. 가불금청구권

가. 도입취지

가불금청구권은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당해 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자가 확정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적기에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거나 생계유지 자체가 곤란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치료비 등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가불금청구권은 1963년 자배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초창기에는 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보험회사 등²⁶⁾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 등 행정적 처분이 없어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다. 이후 2003년 자배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가불금청구를 거부한 보험회사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항이 신설²⁷⁾되어 피해자의 가불금청구권이 조금씩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보험회사 등의 입장에서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이 확정되어 가불금청구자에게 지급한 가불금을 환수 받지 못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금액의 70%만 정부에서 보전해줌으로써 보험회사 등은 여전히 가불금청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정부는 보험회사 등의 의견을 수용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2009년 자배법을 개정²⁸⁾하여 보험회사 등의 가불금청구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을 상당수 해소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²⁹⁾.

26) 여기서 말하는 보험회사 등이란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말한다.

27) 2003년 자배법 개정내용을 보면 자배법 제40조(과태료) 제2항 제1호에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8) 자배법 제10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상의 정부보전금액을 70/100에서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 2009.2.6 개정되었고 2010.2.7자로 시행되었다.

29) 김성완, 앞의 논문, pp. 71~72.

나. 인정근거

직접청구권은 자배법 및 상법에 그 근거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가불금청구권은 자배법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가불금청구권의 인증근거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본질설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법정효과설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가불금청구권의 인정근거 또한 직접청구권에서 언급한 책임보험 본질설과 법정효과설로 나누어 그 근거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먼저 책임보험 본질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책임보험이 궁극적으로 제3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으로 달리 그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책임보험의 성질자체에서 인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약관³⁰⁾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배법 등에 의하여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도 가지급보험금 지급 청구권이 자배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가불금청구권의 경우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가지급보험금의 경우 보험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보기는 어려우며 또 가지급보험금 청구는 유효한 보험계약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가불금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과 같이 유효한 보험계약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책임보험 본질설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법정효과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불금청구권은 자동차사고의 경우 사고유형, 내용 및 경위 등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하여 배상책임에 대한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보험자의 배상책임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피

30)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32조 가지급금의 지급(손해보험협회(2014), **자동차보험표준약관집(개인용자동차보험)**, p. 27).

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보상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기인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이다. 또한 가불금청구권은 직접청구권과 달리 상법 및 여타 법률(원자력손해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배법 등)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자배법에서만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본다면 법정효과설을 그 근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한다³¹⁾.

다. 법적성질

직접청구권을 명시한 자배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에는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에 보험가입자등이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보험회사 등에게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불금청구권이 직접청구권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불금청구권의 법적성질은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참고하여 본다면 손해배상청구권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와 보험자 간 보험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가불금청구권 역시 보험금청구권으로 볼 수 없으며, 가불금청구권은 가지급보험금청구권과는 달리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하며 직접청구권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하고 빠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또한 제정 당시의 자배법³²⁾은 “피해자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각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불금청구권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김성완, 앞의 논문, p. 76 재인용.

32) 제정 당시의 자배법 제14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제1항 및 제2항 참조.

하지만 피해자 보호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하여 도입된 가불금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든 보험금청구권이든 청구권의 성질이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이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이 확정된 경우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보험자가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대신해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보존해주겠다는 자배법 제11조 제5항³³⁾의 내용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³⁴⁾.

라. 가불금청구권의 압류·양도금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자동차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의 사고당사자가 타방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불금청구권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7조에 “보유자가 책임보험 계약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에 대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불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에서 가불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3. 보장사업청구권

가. 도입취지

자배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는 보장사업청구권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사고 피해자 중 보유불명자동차, 무보험자동차, 절취운전자자동차 및 운행자 책임을

33) 자배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분담금 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4) 김성완, 앞의 논문, pp. 79~81 재인용.

면한 무단운전자동차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예컨대 보유 불명자동차 일명 뺑소니차량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를 알 수 없어 피해를 당하고도 치료비 등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또한 가해자가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자력이 전혀 없는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책임보험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배법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보유불명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나. 보장사업제도의 목적

보장사업제도는 보유불명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와 같이 책임보험의 기능이 수행될 수 없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배법은 자동차 인사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운행자 책임 제도를 마련하여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함과 동시에 의무보험 제도(같은 법 제5조)를 마련하여 각 자동차의 책임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여 보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자력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확실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보유불명자동차나 무보험자동차 사고 등에 의한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된 차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고 보유불명 또는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동일한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 보장사업제도이다³⁵⁾.

다. 법적성질

정부보장사업의 목적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 및 책임보험제도 보완에 있으나 그 법적성격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견해와 사법상의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먼저 공법상의 권리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장사업청구권은 그 전제인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손해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정부에게 손해전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의 사업상의 채권과는 발생의 기초가 다르므로 정부보장사업(자배법 제30조)에 의해서 새롭게 발생한 공법상의 권리로 해석하고 있다³⁵⁾.

다음으로 사법상의 청구권으로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장사업청구권도 위험책임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책임제도이고 책임보험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³⁷⁾.

정부보장사업의 법적성질에 대하여 필자의 의견은 사법상의 청구권보다는 공법상의 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자배법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 문제를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로만 간주하지 않고 위험원리와 보상원리에 따른 사회문제로 보아 국가가 일정부분 관여하여 이에 대한 입법을 한 것으로³⁸⁾ 자배법에서 규정하는 보장사업 제도가 책임보험의 연장선상에서 책임보험의 지급기준 및 보상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하고는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그 배상책임자인 가해자를 대신하여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정부가 손해전보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이를 사법상의 청구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보장사업에서 피해자의 보장청구권은 그 전제인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공법상의 채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고 보장사업

35) 김정렬·이득주(2001),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도서출판 청화, pp. 494~495.

36) 木宮高彦 외 3, **註釋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新版)**(2003), 有斐閣, 276頁(조규성(2009),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자의 청구권대위 행사여부에 관한 판례 연구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7452판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0권제2호·통권 제62호, p. 438 재인용).

37) 金澤理, 西島梅治 倉澤康一郎編, **新種自動車保險講座**(1976), 日本評論社, 129頁(조규성, 앞의 논문, p. 438 재인용).

38) 박세민(20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한국보험학회, 보험학회지**, 제82집, p. 104.

을 운영하는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본다³⁹⁾⁴⁰⁾.

라. 보장사업청구권의 압류·양도금지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독일의 경우 1965년 자동차의무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직접청구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보장사업청구권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자동차의무보험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무보험 및 뺑소니 차량사고의 피해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장사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장기금 운영은 의무보험법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⁴¹⁾. 그러나 보장사업청구권과 관련하여 압류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⁴²⁾.

프랑스의 경우는 1951년 무보험 및 뺑소니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보장기금(The Automobile Guarantee Fund)을 설립하였고 위 기금은 시간에 따라 그 보장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2003년 “FGAO(Fonds de Garantie des Assurances Obligatoires)”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FGAO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보험법(Code des Assurances) L421-1 부터 L421-7, R421-1 부터 R421-20 및 A421-1 부터 A421-1-1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보장사업청구권과 관련한 압류나 양도 금지에 관한 규정은 없다⁴³⁾.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장사업청구권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2조에 규정하여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정부에서 책임보험의 범위에서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4조에 보장사업청구권은 압류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39) 같은 의견; 조규성, 앞의 논문, p. 438.

40) 김성완, 앞의 논문, pp. 108~109 재인용.

41) 김은경(20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기금에 대한 청구권의 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6집, 한국기업법학회, p. 257.

42) 손해보험협회(2014), **정부보장사업 분담금 개선 및 우리국민의 해외 무보험·뺑소니 피해 보호방안**, pp. 83~87.

43) 손해보험협회, 앞의 책, p. 117.

III. 직접·가불금·보장사업청구권의 압류·양도금지에 관한 쟁점

1. 압류·양도를 금지한 청구권의 범위

자배법 제40조(압류 등의 금지)는 “제10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또는 제30조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⁴⁴⁾. 이와 관련하여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 및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의 범위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의무책임보험으로 한정해야 된다는 의견과 의무책임보험뿐만 아니라 임의책임보험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⁴⁵⁾.

44) 박세민, 앞의 책, p. 619.

45) 책임보험이란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로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 그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라 대인배상책임보험과 대물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라 영업책임보험, 직업인책임보험 및 개인책임보험으로 분류된다. 또한 보험가입의 강제성여부에 따라 임의책임보험과 강제책임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룰 자배법에서의 책임보험의 정의는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어 먼저 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자배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책임보험”이란 자동차의 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으로 하는 보험을 말하며, “책임공제”란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하고, “책임보험”과 “책임공제”를 “책임보험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배법 제6조에서는 “의무보험”을 자배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즉, “책임보험 등”, “대물의무보험(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자동차보유자가 1사고 당 1천 만의 범위에서 지급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 및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는 책임보험 등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명당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을 통틀어 “의무보험”이라 한다(원래 자배법은 강화상의 강제책임보험 중 대인배상책임에 한정된 책임보험만을 규정하였으나,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이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도록 하는 운수사업자등의 강제책임보험을 추가로 신설하였고(법률 제4488호, 1991.12.31., 일부개정) 이 두 종류의 책임보험을 합하여 “강제보험”으로 규정하였다(법

가. 책임보험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책임보험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자배법은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강제책임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피해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상법 제742조 제2항을 원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압류 및 양도금지를 규정한 제40조의 규정도 강제책임보험금지급청구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지 임의보험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한다⁴⁶⁾. 또 자배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보험가입자등은 제9조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제10조는 의무보험가입자 또는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그 범위도 책임보험금의 한도로 제한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본다⁴⁷⁾.

이외에도 ‘자배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은 운송사업자 등이 대인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피해자에게 배상할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문리해석상으로는 제10조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업용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는 책임보험금 이외에 일반 승용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금까지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사업용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비사업용(개인용)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를 제5793호, 1999.2.5., 전부개정). 이후 대물보험규정을 추가하여 “강제보험”이라는 용어대신에 “의무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법률 제6969호, 2003.8.21., 일부개정).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배법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을 사상하게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을 “책임보험”이라 칭하고 “책임보험”이라는 말은 대인배상1의 의미로 “일반책임보험”이라는 말은 보험법상의 책임보험의 의미로 각각 사용한다. 그리고 자배법 제5조 제3항에서 말하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책임을 지는 보험’을 편의상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이라 하고 “임의보험”이라는 말은 대인배상2의 의미로 사용한다.

46) 양승규, “자동차책임보험금의 압류금지의 범위”, **손해보험**, 452호(2006.7), 대한손해보험협회, p. 37.

47) 문영화(200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규정이 상법 제742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7호, 법원도서관, pp. 438~439.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인상으로 책임보험금만 압류금지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피해자보호라는 사회보장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데도 책임보험금을 초과하여 자배법 제5조 제3항에 의한 보험금청구권도 직접청구권의 대상으로 압류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의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책임보험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⁸⁾.

판례의 입장도 “자배법 제9조 제1항(현행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현행 제9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금지를 정한 같은 법 제32조(현행 제40조)의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하여 책임보험 한정설의 입장에 있다⁴⁹⁾.

나. 임의보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

직접청구권의 범위를 임의보험까지 확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⁵⁰⁾, 기존 자배법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조항이 과거(1998.1.13. 법률 제5505호, 1998.4.1. 시행) “보장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금의 한도안

48) 신안재(20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재판과 판례**, 제16집, 대구판례연구회, pp. 565~566.

49) 대법원 2005.10.7. 선고 2003다6774 판결; 대법원 2006.4.20. 자 2005마1141 결정; 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54781 판결.

50) 서울중앙지방법원판(2005), **손해배상소송실무**, 한국사법행정학회, p. 462.

에서 보험금 또는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1999.2.5. 법률 제5793호, 1999.7.1. 시행)되어 “보험가입자 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로 변경되어 상법상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바, 그 개정의 취지가 피해자의 보호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접청구의 범위를 임의보험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자배법 제10조의 ‘보험가입자 등’을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로 정의한 같은 법 제9조의 내용으로 본다면 법 제10조가 규정한 직접청구권의 범위는 법 제5조 제2항(대물무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즉 법 제5조 제1항(책임보험)과 제3항(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와 같은 해석은 “운수사업자와 비운수사업자를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어서 합리성이 없고, 책임보험금 한도액의 점진적 인상으로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의 구별이 없어지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의 의무화경향 등으로 양자를 통합하는 추세에 있고, 법 제10조에서 말하는 ‘보험가입자 등’은 법 제9조와는 달리 ‘일반적인 보험가입자’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넓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직접청구권의 대상은 책임보험초과부분(대인배상2)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⁵¹⁾.

이외에도 자배법에서 자동차보유자에게 강제하는 보험은 책임보험뿐만 아니라 대물보험(보상한도 1천만 원) 및 사업용자동차의 의무보험(책임보험 보상한도 초과보상 보험)이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의2(책임보험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의 준용)는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대인배상1) 및 임의보험(대인배상2)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를 청구할 경우에도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의 행사에 있어 가해자

51) 오수원, 앞의 논문, pp. 306~307.

가 임의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료비에 한하여 피해자의 보상청구범위를 임의보험까지 확장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보험의 범위까지 확대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⁵²⁾.

다. 검토

직접청구권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보험(대인배상1)으로 한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임의보험(대인배상2)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 학설과 판례에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가불금청구권과 보장사업청구권의 경우 아직 판례 및 학설로 검토된 바는 없다. 이하에서는 직접청구권을 중심으로 각 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조항의 적용범위를 검토하고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

(1) 자배법상 ‘의무보험’과 각 청구권의 범위

먼저 직접청구권의 경우 자배법 제10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등에게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9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그 의무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법 제5조에 의하여 강제되는 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자배법상 의무보험의 정의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책임보험”, “대물의무보험” 및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이 있다. 이와 같이 의무보험의 정의가 자배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리해석상으로는 직접청구권의 범위는 책임보험(공제)과 사업용자동차

52) 일부 신체 손해사정사 등이 주장하는 견해임.

의무보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앞서 책임보험 한정설을 주창한 내용과 같이 동일한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한쪽은 일반 개인차량의 사고로 사상을 당하고 다른 한쪽은 사업용자동차에 의하여 사상을 당한 경우 피해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에서는 비록 문리해석상으로는 의무보험 즉 책임보험·공제(대인1)와 사업용자동차 의무보험으로 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게 할 경우 어떤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사고발생 차량이 개인용차량인가 아니면 영업용차량인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한다면 법형평상 옳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직접청구권의 범위를 자배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책임보험금의 범위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법 제11조 제1항의 가불금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 제11조 제1항 역시 ‘보험가입자 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보상하게 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 제30조 제1항의 보장사업청구권의 경우, 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부는 보유불명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보장사업청구권은 책임보험금 즉,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책임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 할 것이다.

(2) 자배법 제14조의2의 적용

자배법 제14조의2가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 및 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공제)의 보상한도의 범위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치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 제40조에 의한 압류 및 양도금지의 범위 역시 임의보험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법 제40조는 채권의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권리행사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인 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거나 그 적용 범위를 해석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법 제14조의2는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있어 법 제10조 내지 제13조, 법 제13조의2 및 법 제14조만을 준용하고 있을 뿐 법 제40조는 준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법 제14조의2는 자동차보유자가 책임보험 등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보상범위를 확장시켜 의료기관과 교통사고환자 사이의 의료비분쟁을 방지하는 의미는 있겠으나, 이에 더 나아가 위 범위의 청구권까지 당연히 압류 및 양도가 금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와 유사한 건으로 건설업법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건설업법 제55조가 압류금지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동조의 압류금지채권을 건설업법상의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하도급 받은 건설업법상의 건설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의 하도급금액에까지 유추적용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⁵³⁾ 법령에서 압류금지채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의 유추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자배법상의 압류 및 양도규정에도 이와 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자배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청구권의 범위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의 경우는 물론 보장사업청구권의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한 청구권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동조 제3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의 의무보험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할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고를 당한

53) 서울고법 1988.2.23. 선고 87나2437; 대법원 1989.5.2. 선고 88다카8675 판결.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종류 즉 개인용차량인지 영업용차량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 어떠한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지 예측할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며, 또한 최근 자배법 시행령을 개정⁵⁴⁾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사망 및 장애의 경우 최고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부상의 경우 최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책임보험금의 담보범위가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임의보험으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압류 및 양도 금지의 효력의 범위

자배법 제40조는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을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각각의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금지 채권을 행사하여 위 각 압류 또는 양도금지 채권의 목적물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된 경우 그 보험금에 대해서도 압류 및 양도금지의 효과가 미치는가에 대한 다툼이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자배법 제40조는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을 압류 및 양도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미 위 각각의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 수령을 마친 이상 압류 및 양도금지 채권인 위 각각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더 이상 위 압류 및 양도금지의 효력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미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이상 피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위 보험금을 특정 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금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통상 보험금은 예금계좌로 지급되는 바, 당해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양도금지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경

54) 대통령령 제25940호, 2014.12.30., 일부개정(시행 2016.4.1).

우라면 위 각각의 청구권은 피해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 동일성을 상실한다 할 것이며, 나아가 예금계좌에 보험금을 포함한 다른 금원이 혼입될 경우 예금액 중 압류 및 양도금지 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내기도 곤란한 바, 어느 모로 보나 위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양도금지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대법원 역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⁵⁾.

3.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치료비 청구권

자배법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등의 일부를 의료기관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 제40조의 양도금지 규정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다. 또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치료비청구권도 법 제40조의 압류 및 양도금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⁵⁶⁾.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양도금지 규정과의 상충 여부

자배법 제12조 제2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조 제5항 본문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시의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신속하고 공정

55) 대법원 1996.12.24. 자 96마1302,1303 심결; 대법원 1999.10.6.자 99마4857 결정 등.

56) 일부 시민단체 및 손해사정사의 견해임.

한 거래질서 확립과 의료기관 및 교통사고환자 간의 치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⁵⁷⁾. 즉 이 규정은 자배법의 다른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경우에 있어서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법 제40조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채권자들 등에게 위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법 제12조에 기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피해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직접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 제40조가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이와 같이 법 제12조와 법 제40조는 모두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 제12조가 법 제40조의 기준과 상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배법은 ‘압류 등의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특별히 제12조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자배법 자체에서 법 제40조의 예외로 제12조의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법에서 규정하는 ‘압류 등의 금지’ 조항의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본다.

나. 치료비청구권도 압류 및 양도금지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배법 제40조에서는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청구권으로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제12조 제2항)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40조는 채권의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의 권리행사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법 제40조의 문언 그 자체에 의해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인정한 법 제12조 제2항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

57) 김정렬 · 이득주, 앞의 책, p. 438.

다. 또한 자배법 제정취지의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앞에서 검토한바와 같이 자배법은 인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5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금지되는 바,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의 채권자가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의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압류는 법 제40조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청구한 치료비에 대한 압류 여부

자배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치료비)를 청구하여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 압류채권자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이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채권자가 아닌 자는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법 제12조 제5항에 의할 때, 의료기관이 이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의료기관의 치료비 청구권은 이미 만족을 얻은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별도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나아가 의료기관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는 법 제12조 제5항 단서의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이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후에 그 의료기관의 채권자가 기 지급된 위 금원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것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채권자 사이의 문제일 뿐인 바, 이러한 경우 의료기관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청구는 불가능할 것이다.

IV. 결어

자배법에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것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항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 청구권의 적용과 관련하여 각 청구권의 적용범위를 책임보험(대인1)으로 한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의보험(대인2)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와 위 청구권으로 지급된 보험금에까지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경우도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일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의 압류 및 양도규정과 관련한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필자는 책임보험으로 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자배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의 의무보험에 대하여도 위 청구권이 적용될 여지는 없지 않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종류 즉 사고를 야기한 차량이 개인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면 어떠한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지 예측할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영업용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개인용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보다 더 많은 한도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기에 이는 형평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최근 자배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사망 및 장애의 경우 최고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부상의 경우 최고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책임보험금의 담보범위가 크게 확대된 점을 감안한다면 굳이 임의보험으로 확대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압류 및 양도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느냐에 대하여 필자는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은 자배법에 규정하는 압류 및 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즉 피해자가 자배법에 근거한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 수령을 마친 이상

압류 및 양도금지 채권인 위 각각의 채권은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위 압류 및 양도금지의 효력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직접 보험회사 등에게 청구하여 그 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자배법에서 규정하는 양도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자배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금지 조항은 피해자가 채권자에게 위 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최소한의 치료도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들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의료기관이 직접 치료비를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40조가 금지하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치료비청구권 역시 법 제40조에는 의료기관의 보험회사등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대하여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치료비청구권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거나 그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자배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직접청구권, 가불금청구권 및 보장사업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한 조항 역시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자배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익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 적용에 있어 피해자의 형평에 치우침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재철, “책임보험과 피해자인 제3자”, **해상·보험법에 관한 제문제(하)**, 법원행정처, 1991.

(Translated in English) Jaechul Kang, “Liability Insurance and the Third Victim”, *Court of Korea*, 199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자동차 등록대수, 2천 1백만 대 육박”, 2015.

(Translated in English)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Number of Vehicle Registration Approaches 21 Million”, 2015.

김상묵·안근, “자동차 사고 시 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에 대한 소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대인배상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연구** 제8권 제1호, 2008.

(Translated in English) Sangmook Kim · Geun An, “A Study of Direct Claim Right to Insurance Money of the Injured Person against an Insurer in Case of Automobile Accident -Focused on Personal Damage under the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Institute for Local and Rural Development*, Vol. 8, 2008.

김성완, “책임보험에서의 가불금청구권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 2014.

(Translated in English) Seongwan Kim, “A Study on the Right of Action for Temporary Payments in Liability Insurance”, *The Justice*, Vol. 143, 2014.

김성태,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시효”, **상사판례연구Ⅱ**, 1996.

(Translated in English) Sungtae Kim, “A study of Nature and Prescription of A Direct Right of Action”, *Research of Korea Commercial Cases*, 1996.

김은경, “독일 보험계약법상 책임보험에서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변화”,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2집 제2호, 2012.

(Translated in English) Eunkyung Kim, “Conversion of Direct Right of Action

Interred in Liability Insurance under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Law Collection of Treaties, Vol. 32, 2012.

_____, “자동차손해배상보장기금에 대한 청구권의 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독일
 의 경우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제6집, 한국기업법학회, 2000.

(Translated in English) Eunkyung Kim, “A Legal Study about a Right of Claim for
 Government Compensation System”, *Research of Korea Business Law*, Vol.
 6, 2000.

김정렬·이득주, **자동차손해배상제도 해설**, 도서출판 청화, 2001.

(Translated in English) Jungryul Kim ·Deokju Lee, *Handbook of Automobile
 Compensation System*, Chunghwa, 2001.

김태주·김문재,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경북대
 법대논총**, 제23집, 1985.

(Translated in English) Taeju Kim · Moonjae Kim, “A study of a Direct Right of
 Action in Automobil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Law Collection of
 Treaties*, Vol. 23, 1985.

문병일,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P&I 보험을 중심으로”, **한국해
 법학회지**, 제32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10.

(Translated in English) Byungil Moon, “Nature of A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Insurers focused on P&I insurance”, *The Journal of the korean maritime law
 association*, Vol. 32, 2010.

문영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규
 정이 상법 제742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통권 제57호, 법원도서관, 2006.

(Translated in English) Younghwa Moon, “A Study on Application of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and
 Commercial Law”, *Precedent Explanat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Vol.
 57, 2006.

박영준, “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안암법학**, 제18호, 2004.

(Translated in English) Youngjun Park,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a Direct Claim in Liability Insurance”, *Anam Law Review*, Vol. 18, 2004.

_____,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상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2010.

(Translated in English) Youngjun Park, “A Study on the Third Party of a Direct Claim in Liability Insurance”, *The Journal of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 Vol. 28, 2004.

박세민, “책임보험상의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법적 논점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27호, 2008.

(Translated in English) Semin Park, “A Legal Analysis on Some Legal Issues as Regarding the Direct Right of Action in a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Anam Law Review*, Vol. 27, 2008.

_____,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소고”, **보험학회지**, 제82집, 한국보험학회, 2009.

(Translated in English) Semin Park, “A Legal Analysis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Business”, *Korean Insurance Journal*, Vol. 82, 2009.

_____, **보험법 제2판**, 박영사, 2013.

(Translated in English) Semin Park, *Insurance Law 2edition*, Pakyoungsa, 2013.

손해보험협회, **정부보장사업 분담금 개선 및 우리국민의 해외 무보험·뺑소니 피해 보호방안**, 2014.

(Translated in English)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Improvement of Government Compensation and Protect scheme for Korean victims of hit and run & non insurance in abroad*, 2014.

신안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의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재판과 판례**, 제16집, 대구판례연구회, 2008.

(Translated in English) Anjae Si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Direct Claim of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and Commercial Law”, *Trial and Precedent*, Vol. 16, 2008.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Translated in English) Seungkyu Yang, *Insurance Law 5edition*, Samjiwon, 2005.

_____,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성질”, **손해보험**, 제325호, 손해보험협회, 1995.

(Translated in English) Seungkyu Yang, “A Study of the Nature of a Direct Claim”, *General Insurance*, Vol. 325, 1995.

_____, “자동차책임보험금의 압류금지의 범위”, **손해보험**, 452호, 대한손해보험협회, 2006.

(Translated in English) Seungkyu Yang, “A Study of the Range of Prohibition of Seizure of Automobile Insurance”, *General Insurance*, Vol. 452, 2006.

오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압류·양도가 금지되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범위 -대법원 2006.4.20.자 2005마1141결정-”, **법조**, 제58권 제2호 통권 제629호, 2009.

(Translated in English) Suwoon Oh, “Analysis on Court Decision : Extent of a Victim`s Direct Claim Prohibited to be Attached or Transferred on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Security Act”, *The Journal of Korean Lawyers*, Vol. 629, 2009.

임충희, “자동차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고찰”, **보험학회지** 제37집, 한국보험학회, 1991.

(Translated in English) Chunghee Lim, “A Study of the Direct Claim in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Korean Insurance Journal*, Vol. 37, 1991.

장경환, “책임보험에서의 제3자의 직접청구권”, **보험법연구**, 삼지원, 2002.

(Translated in English) Kyunghwan Jang, “A Study on the Direct Claims by the third Party in Liability Insurance”, *Korean Insurance Law Journal*, 2002.

_____,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의 성질과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 **경희법학**, 제38권 제1호, 2003.

(Translated in English) Kyunghwan Jang, “A Study on the Nature of Direct Claims in Automobile Liability Insurance and Merger of Right to Claim Damage in Automobile Accident”, *Kyung Hee Law Journal*, Vol. 38, 2003.

장덕조, **보험법 제3판**, 법문사, 2016.

(Translated in English) Dukjo Jang, *Insurance Law 3edition*, Pubmoonsa, 2016.

정경영, “공동불법행위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상사법판례연구**, 제4권, 한국상사판례학회, 2000.

(Translated in English) Kyungyoung Jung, “A Study on Direct Claims of Joint Torts Victims”, *Research of Korea Commercial Cases*, Vol. 4, 2000.

정진옥,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상사판례연구**, 제7집, 한국상사판례학회, 1996.

(Translated in English) Jinok Jung, “A Study on the Starting Point of Computing Extinctive and Extinctive Prescription of Direct Claims”, *Research of Korea Commercial Cases*, Vol. 7, 1996.

정찬형, **상법개론 제14판**, 법영사, 2015.

(Translated in English) Chanhyung Jung, *Introduction to Commercial Law*, Pubyoungsa, 2015.

조규성,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장사업자의 청구권대위 행사여부에 관한 판례 연구 -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다27452판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50권제2호·통권제62호, 2009.

(Translated in English) Kyusung Jo, “A Case Study on Possibility about Subrogation of Governmental Guarantee Operator under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Law if Offender is the Victim's Cohabiting Families”, *Law study of Pusan University*, Vol. 62, 2009.

최기원, **상법학신론(하) 제14판**, 박영사, 2005.

(Translated in English) Kiwoon Choi, *New Commercial Law(the last volume)* 14^{edition}, Pakyoungsa, 2005.

황경학,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소고”, **인천법조**, 제2집, 1995.

(Translated in English) Kyunghak Hwang, “A Study on Direct Claims of the Injured Person in Case of Automobile Accident”, *The Journal of Incheon Lawyers*, Vol. 2, 1995.

木宮高彦의 3, **註釋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新版)**, 有斐閣, 2003.

金澤理, 西島梅治 倉澤康一郎編, **新種自動車保險講座**, 日本評論社, 1976.

田邊康平, **被害者の保険金に對する直接請求權** 保險法の理論と解釋 東京：文眞堂, 1979.

Abstract

To protect victims of automobile accident, there are several rights of claim in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First of all, the direct right of action in liability insurance was established by Commercial Law(Article 724) and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Article 10). Second, the temporary payments right of action was established by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Article 11). Finally, government compensation right of action to make compensation for victims from car accident by hit-and-run or uninsured driver was established under the Article 30 in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Furthermore,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guarantees the claims of the victims in the institutional regulations cannot be seized or assigned with respect to the above three rights. However, there are several disputes related with prohibitive provisions of seize or assignment; for example, it needs to be applied to limited liability insurance, be included the insurance payments to victims and be applied the assignment of the deed of the insurer guarantee to pay directly to the medical institutions for the proper care of the victims.

Therefore, this article looked through the direct right of action, the temporary payments right of action and the government compensation right of action, and then this paper put forward my opinions and suggested improvements about the point in dispute related with prohibitive provisions of seize or assignment regulated in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The Act provisions prohibiting the seizure and assignment with respect to the above rights prescribed in Article 40 will have to be applied by the interests of victims and in applying these provisions will also be no bias in the equity of the victims.

※ **Key words:** liability insurance, prohibitive provision of assignment, prohibitive provisions of seize, the Act on guarantee of compensation for loss caused by automobile, the direct right of action, the government compensation right of action, the temporary payments right of action